

방문판매업 신고증
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
 다단계판매업 등록증
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

재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	상호	법인등록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의 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	사업자등록번호	

재발급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훼손 ※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√ 표 하십시오.
--------	--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문판매업 신고증,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,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 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
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,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,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(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 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